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설비 법령의 변천 비교에 따른 향후 개정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s of the School Facility and Equipment Standards with the Changes in Education Curriculum and Legislations of School Facilities and Equipment

노 란* 윤 성 훈** 정 진 주***
Noh, Ran Yoon, Sung-Hoon Jung, Jin-Ju

Abstract

To ensure the effective operation of a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s should be properly supported. Therefore, changes are required for educational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urriculum, revised 10 times in total from 1945 to 2011, but it's true that the facility and equipment laws, which are the standards of facility and equipment changes, did not adapt to the changes. After 'the Act on Standards of School Facilities' was repealed,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chools,' the corresponding law for the purpose of spatial configuration fo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as enacted in Sept. 1997. This law has been active for 14 years and revised 11 times thereafter. It has also been decided to often revise the curriculum, so the 7th National curriculum has undergone 6 times of minor revisions. Among them, the most recently revised 2009 curriculum is to be applied for elementary school 1st and 2nd grade, middle school 1st grade, and high school 1st grade from the beginning of this year of 2011.

Hereup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the revisions of the school facility and equipment standards which can support the curriculum revised in 2009 and thereafter by examining classrooms and facilities as the learning space that can respond to the changes of school functions and systems with curriculum transi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systems, and of subjects.

키워드 : 교육과정, 기준, 시설·설비, 교과교실제

Keywords : Education Curriculum, Standards, Facilities-Equipment, Departmentalized Class System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설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총 12번의 개정을 거쳐 변화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육시설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었지만, 시설·설비 변화의 기준이 되는 시설·설비 법령이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

던 것이 사실이다.

1969년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제정되었고 16차례의
걸쳐 변화되었다. 체육장 면적 기준의 변화, 보통교실 기
준 면적, 특별교실 기준설 수 등의 변천도 있었지만, 교지
확보 등과 같은 상황 변화에 따른 부분적인 수정·보완에
의한 개정이 주가 되었다. 결국, 이 법령은 변화되는 교육
과정과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학교 설비 기준령’이 폐지된 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위한 공간구성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1997년 9월에 제정되었다. 현재 이 법령이 시설 뒤 이후 14년이 흘렀고 그 후로

* 정희원 청주대 대학원 견학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청주대 건축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 정희원, 청주대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iiniuij@ciu.ac.kr)

10차례의 걸쳐 변화하였다. 교육과정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수시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하여, 제7차 교과과정은 6번의 부분 개정을 거쳐 왔다.

그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09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 된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학교 기능·제도의 변화, 교수·학습체제의 변화, 교과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과 앞으로 변화될 교육과정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시설·설비 기준의 개정 방향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학교 시설의 정의는 평생교육시설, 폐교시설, 교구와 일반 설비 등을 제외한 물리적 시설로 한정하는 학교 시설만을 다루고자 한다. 일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 또는 법령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로 하며,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한다.

학교시설과 관련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 수많은 법령들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이령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만을 다루도록 한다.

연구 방법은 각종 법령과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자료, 시행되어진 다른 교과과정 변천에 따른 학교 시설에 관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문헌·자료 조사를 진행한다.

1.3 선행 연구

기존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7차 교육과정이 제정이 된 이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시설의 기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관련된 연구로 ‘초·중등 학교시설·설비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박영숙 외, 1996),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급별 시설 공간 요건 분석 연구’(박영숙 외, 2000), ‘제7차 교육과정 대비 학교시설 모형 개발 연구’(오덕성 외, 2003), ‘학교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이화룡 외, 200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지원을 위한 중등학교 시설 개선 방안’(성병창 외, 2007)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한 초·중·고등학교의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 단위 학습

공간 및 특별교실을 중심으로-’(최병관 외, 2009) 등을 들 수 있다.

‘초·중등 학교시설·설비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 급별 내용과 교과별 내용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교육과정과 시설·설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나, 6차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7차 교육과정은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규모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교실에 국한되어 있거나 기존의 ‘시설·설비 기준령’의 기준을 전제로 하여 연구되었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2. 학교 시설·설비 법령의 변천

2.1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변천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학교시설에 관한 다양한 변화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시설·설비 법령도 변천해 왔다.

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최초의 법령인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은 1969년 제정된 후 교육과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16차례의 개정을 걸쳤다. 하지만 이 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1997년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초기의 개정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아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의 개정이었다. 법령의 한글화 정비, 제재 조치 법제화와 같은 개정이 있은 후에 설립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다. 이는 교육시설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개정들 사이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별교실에 관한 개정도 있었다.

표 1.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변천

개정 시기	개정 내용	특징
1967.10.26	•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제정	
1969.12. 4	• 법령에 사용된 단어들과 어긋난 맞춤법을 교정	법령 한글화 정비
1970. 3. 3	• 실업고등학교와 전문고등 학교의 등장 • 체육장면적의 기준이 12학급 또는 2학과로 개정	교육의 시설 설비 기준에 미 달되는 학교의 학급 수 감축 또는 학생 모집의 정지 등 제재 조치 법제화
1970.11.25	•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 법제화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1973.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장 면적에 대한 기준 개정 교육과정에 필요한 특별교실 설치 규정 신설 보통교실에 '학급 수에 상당하는' 단서 조항 삭제 	
1976.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에 도서·벽지 등에 대한 지역 여건을 반영 	도서 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기 위한 개정
1976.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학교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1979.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교실면적 66m' 이상으로 변경 권장시설에 어학실습실, 생활지도관, 학습자료실, 온수공급시설 신설 	
1980. 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장 기준 면적 세분화 및 축소 	
1982.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에 대한 단위,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변경 유치원 최소면적 축소 	유치원 확보 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1982.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설립 용지 확보난 해소를 위한 체육장 기준 면적 축소 	
1984.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교육부령의 기준을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 	기준을 교육내용의 변천, 새로운 교구 및 기자재의 개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1988.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 교육 대상자들의 취학편의를 위한 시설 및 통학버스 운영 규정을 마련 	
1991.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 변경 설비 등의 내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기 위한 근거마련 	
1992.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시설에 회의실, 교재 연구실 신설 컴퓨터교실의 설치기준 마련 교육시설기준을 학생수에 따라 설정 	교지의 확보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지의 기준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과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실의 신설과 과학교실의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199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변경 	
1997.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폐지 	

2.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변천

학교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7차 교육과정으로 들어서면서 고등학교 설립기준을 최소화하여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쉽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새로 개정되었다.²⁾

2)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15484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개정문, 1997

표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변천

개정 시기	개정 내용	특징
1997.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폐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신설 교사대지면적 기준이 건폐율로 변경 교사의 필수시설과 권장시설의 분류 폐지 	고등학교 설립기준을 최소화하여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쉽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2001.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 부로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
2002.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법 폐지 후 세분화된 법령으로 규정 변경 특성화중·고등학교의 시설 기준면적 완화 	특성화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
2005.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 제정,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 정리 	유아교육법이 제정(법률 제7120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
2005.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별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건축물을 교지 안에 들 수 있음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 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
2005.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내부 환경에 관한 규정 삭제 학교보건법 제정,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 정리 	「학교보건법」의 개정(법률 제7396호, 2005. 3. 24. 공포, 2006. 1. 1. 시행)
2007.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라 자율학교에 대한 교장 자격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학교 교장공모제의 시범적용 근거를 마련
2007.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특성에 따라 교사 기준 면적을 일정 범위 안에서 완화 복합시설에 관한 조항 신설, 국·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들 수 있게 됨 	빌딩형 학교 및 도심형 소규모 학교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부지 구입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정
2008. 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와 통합,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2.29. 공포·시행)
2009.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
2010.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경우 교육과정이나 새로운 학교 운영 형태에 관련된 개정도 있지만 '유아교육법', '학교 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개정이 눈에 띈다. 이는 학교와 관련된 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었으며 학

교 시설·설비에 관한 규정이 많은 부분 완화되어지고 관련된 다른 법령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학교 형태의 등장으로 그와 관련된 복합시설에 관한 조항,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한 조항의 신설과 같은 학교들에게 새로운 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도 있었다.

2.3 실 기준의 변천

1) 우리나라 실 기준의 변화

표 3은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상의 실 기준의 변화로 본 연구에서는 면적 산출 방식에 대한 연구와 개정 방향 제시는 배제하기로 하며, 단지 면적 기준과 그에 관한 산출 방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와 학교시설을 어떻게 규정하고 구분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은 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그 중 실 기준의 변화를 가져온 개정은 제정되었던 때를 제외하고 크게 3번의 개정으로 볼 수 있다.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은 개정이 될 때마다 그 규정이 강화되고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은 일반교실, 기타 제실, 권장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타제실은 도서실, 시청각실, 보건위생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권장시설이라는 분류 아래에 강당, 체육관, 수영장등과 같이 많은 실들이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교사면적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입하여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교실의 면적 산출도 학생 1인당 최소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에 기타 제실에 관한 모든 규정을 폐지하고 학생 1인당 최소면적으로 제시하며, 학교에 그 권한을 일임하고 있다. 권장시설 조항은 폐지되었다.

이처럼 많은 규정 조항들이 폐지되고 완화되었으며 또 학교에 그 권한이 일임되었다.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학교 시설들이 나타나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준과 비교해보기 위해, 외국 사례 중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기준을 검토하였다.

2) 영국의 실 기준

영국의 학교의 시설기준은 1996년에 개정된 학교 건물과 부지규정(Education(School Premises) Regulation)에 규정

표 3. 실 기준의 변화

면적 기준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1997년 폐지)				1997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1969 (제정)	1973 (3차 개정)	1979 (7차 개정)	1992 (14차 개정)	
교사 면적 기준	• 건물 지상 최하위 층 면적의 2.5배 이상	• 좌동	• 좌동	600인 이하 : 4,600 601-1,800인 이하 : 4,600+(N-600)x3 1,889명 초과 : 9400+(N-1,800)x3	240인 이하 : 7N 241-960: 720+4N 961인 초과 : 1,680+3N
일반 교실 면적 기준	• 기준 면적 90m ² , 교실 수는 학급 수와 동일, 기준 면적에 복도를 포함	• 기준 면적 63m ² , 교실 수는 학급 수와 동일, 복도를 포함하지 않은 실내 면적	• 기준 면적 66m ² , 교실 수는 학급 수와 동일, 복도를 포함하지 않은 실내 면적	• 좌동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기준
도서실	• 다른 실과 겸용 사용 가능	• 보통교실 겸용 단행본 1학급당 100권	• 좌동	• 좌동	
시청각실	• 기준 없음	25-36학급: 94 37-48학급: 94 49학급 이상: 188	25-36학급: 99 37-48학급: 99 49학급 이상: 197	• 좌동	
보건위생시설	• 기준 없음	• 교직원 화장실 기준 없음 • 학생 화장실 소변기는 필요한 수만큼 대변기는 학급당 1.5개 이상 • 양호실은 학교당 1실 이상, 관리 용실과 겸용 가능 • 휴게실, 탈의실, 사위실은 두지 않을 수도 있음	• 교직원 화장실 대변기는 30인당 1개 이상 • 학생 화장실 소변기는 필요한 수, 대변기는 학생 30인당 1개 이상 • 학교당 1실 이상 • 학교당 1실 이상	• 교직원 화장실 대변기는 30인당 1개 이상 • 학생 화장실 소변기는 필요한 수, 대변기는 학생 30인당 1개 이상 • 학교당 1실 이상	규정 항목 폐지 각 학교에 일임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기준
권장시설 기준	• 필요에 따라 습식시설과 기숙사를 둘 수 있다.	• 강당, 체육관, 수영장, 기숙사, 급식시설, 교원사택, 은수공습	• 3차개정 + 어학연습실, 생활지도실, 학습자료실, 온수공습	• 7차개정 + 회의실, 교재연구실	권장시설 조항 폐지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영국의 교육 및 고용부(DfEE)의 교육 표준국(OFSTED: 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에서 발행한 학교시설의 면적 기준(Area guidelines for schools)이라는 학교시설 지침서에는 학교건물 및 부지, 기타 공간 형태 특히 교수·학습공간의 일반적인 계획 수법과 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디자이너와 학교 계획가들에게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건물과 부지의 면적에 관한 지침과 신축, 증축, 개선 시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³⁾

표 4. 영국의 학교시설 분류⁴⁾

시설분류			면적 비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수학습영역 (Timetabled Teaching area)	일반교수학습영역 (general teaching area)	표준교실 (standard classroom)	60	
		대규모 교실 (large classroom)		
	실습 영역 (practical Area)	상업 및 지역 교육과정 실습실		
		정보기술 실습실		
		과학 실험실습실		
		디자인과 기술		
		미술실		
		음악실		
		연극/미디어 스튜디오		
시간표에 배정되지 않은 교수학습영역 (non-timetabled teaching area)	체육 영역(physical education spaces)			
	홀, 접회공간			
	정보자료 공간 (resource area)	-도서정보자료실		
		-교과별 정보자료실		
	보조 학습 공간	-정보기술/세미나실/암실/과제실/미생물실/온실/동물실/음악그룹실/식품검사실/녹음실/외국어보조교사그룹실 등		
		-특수교육(SEN) 지원공간		
		연구 및 생활공간		
		교직원시설		
		학생수납공간 및 화장실		
지원시설 영역 (non-teaching area)	교사용 수납공간	5.2~5.6		
	급식시설	4.0~6.0		
	부속공간	1.2~2.4		
	통로공간	17.6~19.2		

중요한 실별로 학생 1인당의 면적이 아닌 면적 비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지원시설 영역에 교사용 수납공간, 학생수납공간을 규정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 통로 공간에 대해서도 규정해주고 있는데, 통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어 복도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라고 사

3) 이화룡, 학교시설기준개정, 교육인적자원부, 2003

4) 이화룡, 학교시설기준개정, 교육인적자원부, 2003

료된다.

실습영역 중 상업 및 지역 교육과정 실습실이 눈에 띈다. 이는 지역마다 특성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실이라 판단된다.

3) 일본의 실 기준

일본의 학교 건축 설계자를 위한 지침서 혹은 건축계획 이론서에서 그 학교시설의 분류 체계를 접할 수 있었다. 건축설계 자료집성의 내용과 長澤 倔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학습 공간, 생활·교류 공간, 관리 공간, 외부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생활·교류공간이라는 구분으로 학생들의 교류 측면에서 공간에 접근하고 있다. 식당, 화장실, 로커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보건 위생시설과 권장시설로 분류한 시설들이 이 구분에 포함되어 있다. 또 방송실과 보건실이 관리공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었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의 분류보다 더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고 특별 교실에 도공실, 요리실이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이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설비라고 사료된다.

표 5. 일본의 학교시설 분류⁵⁾

구분	건축설계 자료집성	長澤 倔
• 보통교실	• 보통교실	• 요리실 • 음악실 • 도공실 • 기술실 • 가정실
• 특별교실 •同준비실	특별교실	• 도서실 • 시청각실 • 교육공학실 • 교육실험실
• 도서실 • 학습용 open space • 다목적실	공통학습제실	• 식당 • 캠의실 • 공용공간 • 로커 • 화장실 • 음수대 • 아동화장실 • 클럽활동실
교류공간		• 단란, 휴게장소 • 소지품처리 • 청소도구함 • 저, 고학년의 분리 • 신발처리
관리공간	• 교장실 • 사무실 • 회의실 • 응접실 • 보건실 • 방송실 • 용무원실 • 경비원실	• 교무공간 • 사무공간 • 지원휴게실 • 상담실 • 교재제작용공간 • 인쇄실 • 작업공간

관리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실 사무창고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관 스테이지 유도장 검도장 실내풀장 기구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경기장 쟁의실 클럽실

3.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학교 시설의 변화 요구

3.1 교육과정의 변천

1945년도 광복 이후 미군에 의해서 처음 공포된 교육과정에 관한 법령은 변화되어 가는 교육제도에 대한 대응과 시대가 원하는 인간상에 대한 기준이 변화될 때마다 변화되어 왔다.

교육과정은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경험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또다시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의 변화로 인한 개정으로 교육이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변화였다.

‘다교과 1교과서’ 체제에서 ‘1교과 다교과서’로의 체제 변화는 보다 다양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어 각 학교가 선택하여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개정이었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정이었다.

1954년부터 1992년까지 교육과정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때마다 차수로 명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한 명명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2월 24일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시 개정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차수가 아닌 개정 연도를 밝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명명하게 되었다.⁶⁾

표 6. 교육과정의 변천

기별	공포(고시)	근거	교육과정	특징
제1차	1954. 4.20	문교부령 제35호	시간배당 기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
	1955. 8. 1	문교부령 제44호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교과의 교과과정 제시
	1955. 8. 1	문교부령 제45호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의 목적: 직업을 선택·습득하기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력을 높이는 목적
	1955. 8. 1	문교부령 제46호	고등학교	
제2차	1963.	문교부령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중심 교육과정

5) 이화룡, 학교시설기준개정, 교육인적자원부, 2003

6)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제3차	2.15	제1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문 신설('72) 교련 시설('69) 각급 학교 간의 연결, 각 학년 간의 관련, 각 교과의 계통적 발전 등을 고려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 강조
	1963. 2.15	문교부령 제120호	중학교	
	1963. 2.15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제4차	1973. 2.14	문교부령 제310호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문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체계 정비 도덕 신설('73) 국사 신설('73) 일본어 신설('73) 기술교육 쇄신
	1973. 8.31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1974. 12.31	문교부령 제350호	고등학교	
제5차	1981. 12.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정신 교육 강조 학습량 수준 축소 조정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 통합 운영 단일 교육 사조와 이론의 지배 탈피 교과, 경험, 학문 중심 교육 사조의 균형과 조화 “다교과 1교과서” 체제
	1981. 12.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중학교	
	1981. 12.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고등학교	
제6차	1987. 3.31	문교부 고시 제87-7호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 사회의 대응하는 교육 초등학교 통합교육과정 제정 정보산업 신설 과학고, 예술고 제정 지역성 강조 “1교과 다교과서” 체제
	1987. 6.30	문교부 고시 제88-9호	초등학교	
	1988. 3.31	문교부 고시 제88-7호	고등학교	
제7차	1992. 6.30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성 운영체제 개선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 분담 환경, 러시아어, 전로직업 시설 컴퓨터,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 신설 초등영어 교과 신설 선택 교과제 도입
	1992. 9.30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초등학교	
	1992. 10.30	교육부 고시 제1992-17호	고등학교	
이후 1번재 부분 개정	2004. 11.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2호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교육과정
이후 2번재 부분 개정	2005. 12.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1호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을 재편성
이후 3번재 부분 개정	2006. 8.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초·중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별 수업 권장, 강화 수학, 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폐지
이후 7년 개정 교육 과정 (4번 째 부분 개정)	2007. 2.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중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재량활동의 활성화 -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만으로 운영 선택과목 일원화 중·고 사회, 역사 과목 분리 선택과목군 조정
	2008. 9.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 교육 강화 보건 신설

이후 5번째 부분 개정	2009. 3.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고등학교	• 경제 교육 강화
이후 2009 년 개정 교육 과정 (6번 째 부분 개정)	2009. 12.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초·중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 교육 인간상: '글로벌 창의인' • 국민공통교육기간 하향 조정 • '미래형 교육과정' 구성을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화 • 학교의 자유화·다양화·특성화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 편제: 교과, 교외활동 •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 • 역사 교육 강화

1) 제7차 교육과정 1~5번째 부분 개정

3번째 부분 개정에서 수학, 영어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수준별 수업을 권장 강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아닌 교육의 방법에 대한 차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정이었다.

4번째 부분 개정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과 그동안의 국가·사회적 요구, 주5일 수업제 시행 등을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론개정이 이루어졌다.⁷⁾

2)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1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상을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면서 미래형 교육의 인간상으로 설정한 '글로벌 창의인'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앞으로 변화되어질 미래의 교육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적합성 제고, 교육과정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책무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서 구상되었다.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인간상이 제시된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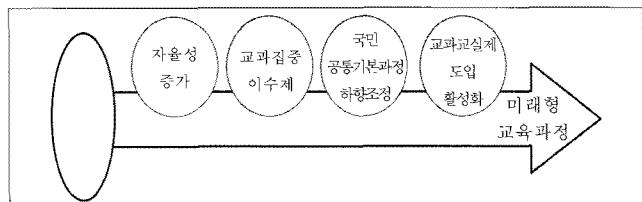


그림 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3.2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학교 시설의 요구 변화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학교 시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1954년부터 1992년까지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총 6차례의 차수 개정이 있었다.

제1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었지만 2~6차로 오게 되면서 한문, 교련, 정보산업, 컴퓨터, 외국어와 같은 새로운 교과목이 생겨남에 따라 학문과 교련의 교수에 필요한 시설과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등과 같은 새로운 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교과목이 주가 되는 개정들에 따른 시설·설비의 요구가 많았고, 점차적으로 교육내용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늘어나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앞선 개정과 마찬가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상을 구체화한 교육과정이다. 학교의 자유화, 다양화, 특성화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민공통교육기간을 하향 조정하고 교과집중이수제를 도입했다.

1) 수업 방식의 변화로 인한 요구 변화

제7차 교육과정의 3번째 부분 개정에서 수학, 영어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수준별 수업을 권장·강화하여 교육내용의 차별화가 아닌 교사들이 보다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설비의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교과목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시설·설비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수업 방법으로 인한 요구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업 방법으로 인한 요구가 등장하였고 이는 앞으로의 교육과정이 단순히 교과목의 변화가 일어나는 개정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단편적으로 7차 교육과정으로 와서 2007년에 보건 과목이 신설된 것 이외의 교과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8)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표 7.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학교 시설의 요구 변화

교육과정	학교 시설의 요구의 변화
제1차 (1954~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후 혼란스럽고 열악한 상황, 최소한의 수업 공간 확보가 목표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음
제2차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 교육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요구 한문과 교련 과목 신설, 교련 과목과 관련된 시설·설비 필요
제3차 (1973~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교육의 쇄신,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별도 편제.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 요구
제4차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내용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설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함 지역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는 시설·설비가 뒷받침되어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내용의 지도 권장
제5차 (1987~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과 과학교과가 제정 정보산업 교과목 신설, 이와 관련된 시설·설비 요구
제6차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교과목 신설, 외국어에 관련된 전문 교과 신설, 초등학교 영어 교과 신설 신설된 교과와 관련된 시설·설비 요구, 많은 교과가 새로 신설되며 다양한 시설·설비가 필요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및 학교의 자율, 재량이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학습 공간과 특별 교실이 요구
이후 1,2번재 부분개정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음
이후 3번재 부분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 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폐지 수준별 수업을 권장·강화,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는 시설·설비 요구
제7차 (1997~ 현재) 개정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재량 활동의 활성화 보건 과목이 신설,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요구
이후 5번재 부분개정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음
이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 도입의 활성화로 인한 시설·설비 요구 학교의 자율성 강조,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는 교육과정.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시설·설비 요구

수업 방법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학교의 시설·설비가 단순히 새로운 실을 만들거나 실의 면적을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이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 하는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2)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방식의 도입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 중 하나가 중·고등 학교의 교과교실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정^{9)이}

라고 보았을 때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활성화될 교과교실제를 염두에 두고 학교 시설·설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교실제의 실행에는 홈베이스, 미디어스페이스 등과 같이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과교실제를 시행함에 있어 수업 방법과 학교의 운영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을 때 일선 학교들의 많은 변화를 요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기존의 학교 시설에서 확보하지 않은 새로운 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참고할 만한 기준을 시설·설비 법령이 제시해 주어야 하며, 단순히 새로운 실의 등장에 따른 개정이 아닌 수업 방법과 학교 운영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선의 기준을 법령으로 제시되어 학습 공간으로써 교실 및 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학교 시설 요구 변화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 기준의 비교

4.1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과 제1~6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시설의 요구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설비를 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설·설비 법령이 그 요구의 발맞추어 변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1~6차 교육과정과 시설·설비 법령을 비교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개정된 시기와 그를 뒷받침할 시설·설비의 관한 법령이 개정된 시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1~6차 교육과정의 요구 사항이 대부분 교과목 신설로 인한 새로운 실의 요구라고 보았을 때 교과목은 신설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실의 규정이 뒤늦게 법제화된 것은 법령이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개정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제3차 교육과정의 경우 1973년에 일본어 과목이 신설되었고, 1974년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편제되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시설·설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학실습실에 관한 기준이 제정된 것은 6년 뒤인 1979년, 각종 학교에 대한 시설 기준이 마련된 것은 2년 뒤인 1976년의 일이다. 교육과정의 변천

9) 교과교실 학교 운영방식의 정의: 모든 교실을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전용교실로 구성하고, 학생은 자신의 시간표에 의해 시간마다 이동하는 방식

표 8. 학교 시설 요구와 시설·설비 법령의 변천 비교(제1~6차)

교육과정	요구	개정 내용
제2차	• 교육관련 시설·설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제정 법령에 사용된 단어들과 어긋난 맞춤법을 교정 실업고등학교와 전문고등학교의 등장 체육장면적의 기준이 12학급 또는 2학과로 개정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 법화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 신설로 인한 관련 시설·설비 요구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 시설·설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장면적에 대한 기준 개정 교육과정에 필요한 특별교실 설치 규정 신설 보통교실에 '학급 수에 상당하는' 단서 조항 삭제 '특수지역'에서 '도서·벽지'로 명확한 기준 제시 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에 도서·벽지 등에 대한 지역 여건을 반영 각종 학교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보통교실면적 66m² 이상으로 변경 권장시설에 '여학실습실', 생활지도관, 학습자료실, 은수공급시설 신설 체육장 기준 면적 세분화 및 축소
제4차	지역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는 시설·설비의 뒷받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에 대한 단위,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변경 유치원 최소면적 축소 학교설립 용지 확보난 해소를 위한 체육장 기준 면적 축소 일부 교육부령의 기준을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
제5차	정보산업 교과목 신설, 관련 시설·설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 교육 대상자들의 취학편의를 위한 시설 및 통학버스 운영 규정을 마련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 변경 설비 등의 내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기 위한 근거마련
제6차	많은 교과가 새로 신설, 다양한 시설·설비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시설에 회의실, 교재연구실 신설 컴퓨터교실의 설치기준 마련 교육시설기준을 학생수에 따라 설정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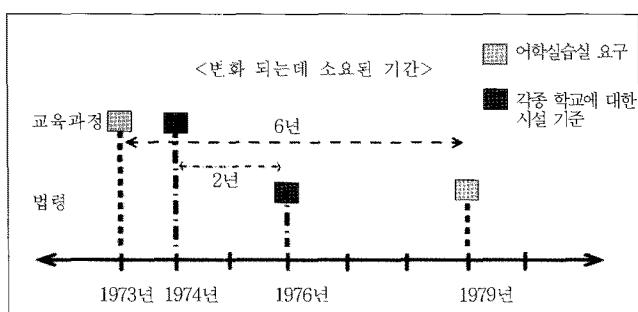


그림 2. 교육과정의 변천과 기준 개정의 시기 차이

과 그와 관련된 시설·설비의 기준이 변화 시기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 뒷받침해주는 시설·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후에 이에 대한 기준이 생겨나면서 일선 학교들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는 교과교실제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

태에서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시설의 변화 요구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골격을 유지한 채로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 9. 학교 시설·설비의 요구와 시설·설비 법령의 변천 비교 (제7차)

교육과정	요구	개정 내용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학습 공간과 특별 교실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폐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신설 교사대지면적 기준이 건폐율로 변경 교사의 필수시설과 권장시설의 분류 폐지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 변경 교육법 폐지 후 세분화된 법령으로 규정 변경 특성화중·고등학교의 시설기준면적 완화
이후 1번재 부분 개정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 제정,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 정리 수준별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음 교사의 내부환경에 관한 규정 삭제 학교보건법 제정,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 정리
이후 2007 개정 교육 과정	보건 과목 신설, 이에 필요 한 시설·설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 학교 특성에 따라 교사 기준면적을 일정 범위 안에서 완화 복합시설에 관한 조항 신설, 국·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둘 수 있게 됨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와 통합, 교육 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
이후 5번재 부분 개정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
이후 2009 개정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 도입의 활성화로 인한 시설·설비 요구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시설·설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

하지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개정이다. 이 개정을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개정이라고 보았을 때 이와 관련된 많은 시설·설비의 변화가 요구되어 지지만 2010년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정만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만 개정되고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의 도입에 따른 어려운 개정도 이루어 지지 않은 현실에서 일선 학교들은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홈베이스, 미디어스페이스와 같은 시설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기준삼을 적절한 방향을 제시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5. 학교 시설·설비 기준의 개정 방향

5.1 시설·설비 기준의 개정 필요성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 또한 강화하여 학교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규정의 역할이라고 보았을 때 현재의 규정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 적정면적 기준

앞서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시설·설비의 법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해주고 있다. 때문에 많은 학교들 또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교실뿐만 아니라 기타체실까지 최소한의 면적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한 개정이 결국 최소한의 면적 기준에 맞춘 학교들로 획일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족한 법령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각기 달라 설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적정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2) 교과교실제 공간기준

앞으로 변화될 학교 운영방식인 교과교실제는 기준과 달라 학교 시설·설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학교 시설·설비의 변화 없이는 바람직한 시행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이러한 공간 변화 필요

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가장 최근인 2010년에 개정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뿐이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일선 학교들이 참고하고 기준 삼을만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현재 도입되었고, 교과교실제 또한 2009년부터 시범 시행되어 2014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설비 기준의 개정은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 이루어졌다. 두 시기의 차이가 클수록 일선 학교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의 교육과정과 다른 교과교실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관련된 시설·설비의 기준부터 개정하여 국가에서 적정선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틀을 먼저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공용면적 공간기준

앞서 표 5에서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의 요구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의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과목의 신설과 같은 변화가 아닌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의 요구가 더 이상 새로운 실의 등장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교는 교수·학습 방법에 변화에 따라 학생과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요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현재의 사회상을 반영하였을 때 휴게·편의 시설, 다목적 교수·학습 대용 공간 등과 같이 공용면적에 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5.2 개정 방향의 제언

많은 조항들이 폐지되고 완화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과교실제 등과 같이 학교 운영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앞으로의 교육과정의 변천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시설·설비의 적정선을 법령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게 되면 교육과정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시설·설비는 그에 발맞추어 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학생 1인당 최소 면적이 아닌 적정 면적을 산출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최소 면적으로 산출된 학교 시

설은 처음의 의도와 다른 용도와 방식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반면 적정 면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주게 되면 학생 수의 변화와 용도, 방식의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교과교실제에 대한 공간 기준 수립(홈베이스, 미디어스페이스, 교사연구실 등)도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홈베이스, 미디어스페이스, 교사연구실 등과 같은 실에 대한 정의와 공간 기준 수립은 새로운 학교 운영 방식의 도입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일선 학교들에게 교과교실제라는 학교 운영 방식 안에서 더 다양한 학교의 형태들이 생겨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준을 없애고 다양성의 시도단계부터 학교의 재량이 맡겼다면 앞으로는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과 같은 휴게·편의 시설, 다목적 교수·학습 대용공간에 대한 실의 종류를 다시 정의하여 각 실에 맞는 기준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교과 목의 변화가 아닌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될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그동안 ‘교실’에 한정되었던 시설·설비 변화의 요구를 휴게·편의 시설, 다목적 교수·학습 대용공간의 대한 요구로 변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변천과 수반된 학교 시설·설비 기준의 개정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 시설·설비 기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학생 1인당 최소 면적이 아닌 적정 면적을 산출하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기준이 제시해 주고 있지 않은 교과교실제에 대한 공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용면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제시해야 한다.

이미 폐지된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제시해 주었던 내용들 중 일부분이 다시 거론되지만 이는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권장 시설이나 기타 제설 등에 교육과정의 변화나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새로운 실에 대한 신설 등과 같은 권한을 일임하는 제지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기준의 개정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 학습의 측면이나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뿐

만이 아니라 학교별 유휴교실의 기준 정립과 그의 활용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시설 재정의 효율적, 경제적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설·설비 기준에서 위와 같이 적정 면적 기준 등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그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적인 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이용실태와 건축계획 연구, 2002
2. 교과교실제운영가이드 - 시설환경구축영역,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3. 이화룡, 학교시설기준개정, 2003
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5.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6.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7.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15484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개정문, 1997

접수 2011. 6. 15
1차 심사완료 2011. 7. 7
2차 심사완료 2011. 7. 28
제재확정 2011. 9. 22